

보도시점 2026. 3. 30.(월) 11:00
< 3.31.(화) 조간 >

배포 2026. 3. 30.(월)

신학기 수입 어린이제품 안전성 집중검사 결과 위해제품 11만점 적발

- KC 인증을 받지 않거나 필수 정보를 누락한 학용품·완구 등 통관 단계서 차단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 이하 국표원)과 관세청(청장 이명구)은 신학기를 맞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 어린이 제품 등에 대해 3주간(2.9.~2.27.) 통관 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국내 안전 기준을 위반한 위해제품 11만여 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검사는 어린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학습·놀이용품 12개 품목을 중심으로 실시하였으며, 연필·지우개 등 학용품(7.4만점)과 완구(1.4만점)가 주로 적발되었다.

주요 위반유형으로는 KC 인증을 받지 않은 ‘미인증’이 69.7%로 가장 많았고, KC 마크, 인증 번호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표시 사항 위반’이 25.5%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아동용 가방 3종(1.7천점)에서는 국내 안전 기준치를 최대 270배 초과한 프탈레이트 가소제와 최대 43배 초과한 납·카드뮴 등 중금속이 검출되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어린이의 생식기능이나 신체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환경 호르몬이며, 납과 카드뮴은 암을 유발하거나 어린이의 성장 및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유해 중금속이다.

소비자들은 어린이 제품 구매 시 KC 인증마크 부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제품의 인증 여부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적발된 제품 중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성분이 검출된 제품은 반송 또는 전량 폐기 조치하였으며, 국표원과 관세청은 앞으로도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불량제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시기별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과	책임자	과 장	박해범 (043-870-5430)
		담당자	연구관	배승호 (043-870-5435)
담당 부서	관세청 통관국 통관검사과	책임자	과 장	박시원 (042-481-7630)
		담당자	사무관	서주원 (042-481-7841)



붙임 1 주요 적발 사례

구분	제품 사진		비고	
<p>① KC 미인증</p>	 <p>필통</p>	 <p>지우개</p>	<p>인증 등을 받지 않은 제품</p>	
<p>② 허위 표시</p>	 <p>완구</p>	 <p>전기스탠드</p>	<p>인증 등을 받은 제품과 동일하지 않은 제품</p>	
<p>③ 표시 사항 위반</p>	 <p>연필</p>	 <p>연필깎이(전지)</p>	<p>인증 정보* 미(오)표시</p> <p>*KC마크, 인증번호 등</p>	
<p>④ 기준 부적합</p>	 <p>아동용 가방 ※ 가소제 26.95%, 납 739mg/kg</p>	 <p>아동용 가방 ※ 카드뮴 3,241mg/kg</p>	 <p>아동용 가방 ※ 가소제 11.36%, 납 994mg/kg</p>	<p>정밀분석 결과 안전기준* 부적합</p> <p>*가소제 총합 0.1% 이하 납 100mg/kg 이하 카드뮴 75mg/kg 이하</p>

붙임 2 주요 적발 통계

□ 주요 적발 품목

연번	품 목	적발건수(건)	적발수량(점)
1	연필, 연필심	23	55,843
2	지우개	8	14,832
3	완구	126	14,241
4	필통	14	2,188
5	연필깎이	2	1,336
6	책상 스탠드 조명	3	1,060
7	색연필	3	410
8	태블릿PC	5	49
9	어린이용 탈것	3	18
10	기타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아동용 가방 등 섬유제품, 안전모, 전지 등)	21	23,653
합 계		208	113,630

□ 주요 적발 유형

구 분	① KC미인증	② 허위표시	③ 표시사항위반	④ 안전기준 부적합	합 계
적발건수	145건	7건	53건	3건	208건
비 중	69.7%	3.4%	25.5%	1.4%	100%

※ 위반 사항에 대한 분류 기준

- ① 미인증 :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인증을 받지 않음
- ② 허위표시 : 인증받은 제품과 모양, 색상 등이 상이
- ③ 표시사항 위반 :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기 오기
- ④ 기준부적합 : 전문 시험·검사기관을 통해 제품 정밀분석 결과 품목별 안전기준에 부적합